

2018년 정선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 2. 28.

정선군수(인)



- ◆ 우리 군의 '18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4,311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9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4,435억원)보다 124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838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493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210억원입니다.
- ◆ 우리 군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9.59%(23.66%)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72.98%(67.05%)입니다.
- ◆ 우리 군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4억원의 흑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군의 살림규모는 동종자치단체 보다 낮으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동종단체보다 높고 통합재정수지 역시 14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운영이 상당히 건전하다 판단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전영표
(☎560-2229)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 결과		정선군			유사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 입 예 산	431,079	402,020	29,058	443,463	416,130	27,333
	세 출 예 산	431,079	402,020	29,058	443,463	416,130	27,333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역 통 합 재 정 통 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29.59	31.70	△2.11	17.87	18.00	△0.13
	재정자주도[당초]	72.98	73.66	△0.68	65.35	64.21	1.14
	통합재정수지[당초]	1,373	2,542	△1,169	3,040	2,580	461
재정운영계획	성 인 지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 민 참 여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과 계 획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정 운 용 상 황 개 요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 산 편 성 기 준 별 운 영 상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 영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감 액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인 센 티 브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단체 : 군-(2)가평균, 연천군, 평창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금산군, 서천군, 태안군, 담양군, 화순군, 영암군, 완도군, 신안군, 의성군, 울진군, 창녕군, 고성군, 합천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정선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31,079	354,070	8,674	26,437	41,897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24,837	367,862	367,549	402,020	431,079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합 계	260,667	100.00%	290,402	100.00%	290,928	100.00%	324,999	100.00%	354,070	100.00%
지방세	29,202	11.20%	30,001	10.33%	30,997	10.65%	32,390	9.97%	34,847	9.84%
세외수입	20,050	7.69%	38,157	13.14%	44,086	15.15%	50,637	15.58%	48,919	13.82%
지방교부세	104,300	40.01%	107,800	37.12%	109,540	37.65%	132,243	40.69%	148,609	41.97%
조정교부금 등	3,100	1.19%	3,100	1.07%	3,100	1.07%	4,103	1.26%	5,019	1.42%
보조금	95,945	36.81%	96,204	33.13%	87,484	30.07%	85,617	26.34%	95,676	27.0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070	3.10%	15,140	5.21%	15,720	5.40%	20,010	6.16%	21,000	5.93%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정선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31,079	354,070	8,674	26,437	41,897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24,837	367,862	367,549	402,020	431,079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합 계	260,667	100.00%	290,402	100.00%	290,928	100.00%	324,999	100.00%	354,070	100.00%
일 반 공 공 행 정	22,219	8.52%	20,519	7.07%	21,884	7.52%	25,704	7.91%	25,729	7.27%
공공질서및안전	13,490	5.18%	14,787	5.09%	17,673	6.07%	11,241	3.46%	14,616	4.13%
교 육	4,253	1.63%	5,029	1.73%	3,581	1.23%	4,019	1.24%	3,692	1.04%
문 화 및 관 광	13,681	5.25%	21,685	7.47%	27,969	9.61%	30,043	9.24%	34,452	9.73%
환 경 보 호	12,010	4.61%	20,750	7.15%	16,151	5.55%	20,172	6.21%	20,742	5.86%
사 회 복 지	41,641	15.97%	48,729	16.78%	54,063	18.58%	57,060	17.56%	72,823	20.57%
보 건	12,141	4.66%	6,075	2.09%	7,199	2.47%	14,781	4.55%	19,812	5.60%
농 립 해 양 수 산	39,569	15.18%	40,236	13.86%	42,476	14.60%	45,810	14.10%	50,611	14.29%
산 업 · 중 소 기 업	1,332	0.51%	2,883	0.99%	5,801	1.99%	11,645	3.58%	7,739	2.19%
수 송 및 교 통	7,853	3.01%	7,767	2.67%	5,500	1.89%	8,113	2.50%	11,872	3.35%
국 토 및 지 역 개 발	44,643	17.13%	52,352	18.03%	35,301	12.13%	40,531	12.47%	31,774	8.97%
과 학 기 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 비 비	2,912	1.12%	3,906	1.34%	5,196	1.79%	3,886	1.20%	3,886	1.10%
기 타	44,923	17.23%	45,683	15.73%	48,133	16.54%	51,995	16.00%	56,322	15.91%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정선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 A)	비율 (B-A)/A
합 계	413,260	444,742	31,472	0.076
정선군	402,020	431,079	29,059	0.072
정선군시설관리공단	6,571	8,308	1,737	0.26
정선아리랑문화재단	4,231	4,935	704	0.17
정선장학회	438	420	-18	-0.04

▶ 당초예산 총계기준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정선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9.5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9.59 (23.66)	354,070 (354,070)	104,766 (83,766)	249,304 (249,304)	-	- (2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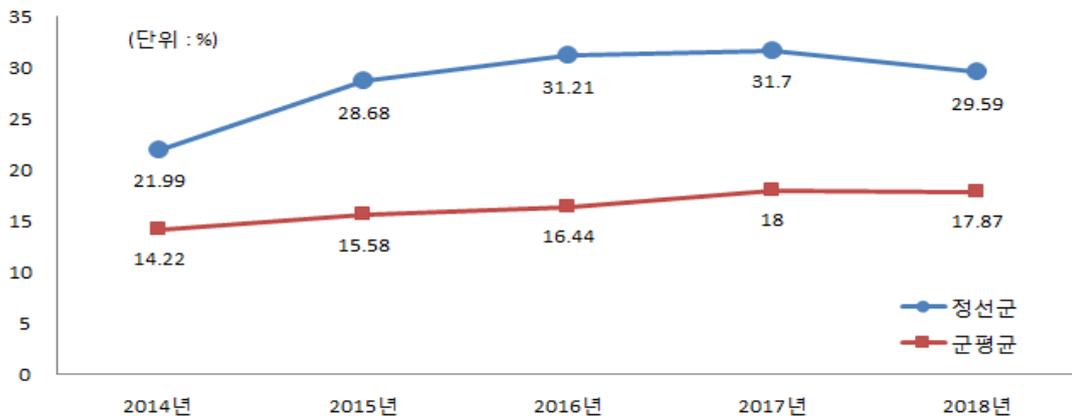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21.99 (18.89)	28.68 (23.47)	31.21 (25.81)	31.70 (25.55)	29.59 (23.6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강원랜드 입지로 인한 지방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이 높아 유사단체 평균보다 높은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정선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72.9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72.98 (67.05)	354,070 (354,070)	258,394 (237,394)	95,676 (95,676)	-	- (2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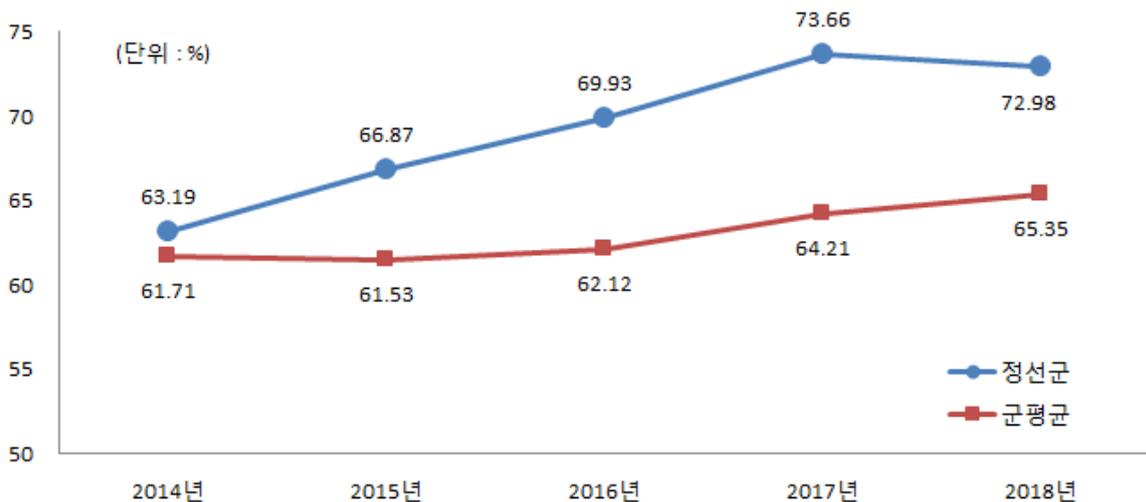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63.19 (60.10)	66.87 (61.66)	69.93 (64.53)	73.66 (67.49)	72.98 (67.0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은 강원랜드 입지로 인한 재정자립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의존재원이 동종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재정자립도에 비해 재정자주도의 차이는 적게 나타났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 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정선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F
	세입 (A)	지출 (B)	용자 회수 (C)	용자 지출 (D)	순용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55,586	381,844	72	0	-72	27,559	381,772	-26,186	1,373
일반회계	333,070	346,401	0	0	0	21,000	346,401	-13,331	7,669
기타 특별회계	14,845	26,436	72	0	-72	5,959	26,364	-11,519	-5,560
공기업 특별회계	7,574	8,674	0	0	0	600	8,674	-1,100	-500
기 금	97	333	0	0	0	0	333	-236	-236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용자(용자지출-용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 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8,130	-13,616	-20,315	-24,531	-26,186
통합재정수지 2	2,763	3,786	1,225	2,542	1,373

☞ 2018년도 우리 군의 통합재정수지1은 26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을 합한 통합재정수지2는 14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당해연도 세입으로는 지출을 충당하지 못해 262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순세계잉여금 276억원을 합할 시 지출을 충당하고 14억원이 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정선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25,786	530,627	546,133	563,018	578,378	2,743,942	2.40%
자 체 수 입	123,835	127,258	130,725	135,042	137,630	654,490	2.70%
의 존 수 입	319,855	326,515	331,965	333,203	341,083	1,652,621	1.60%
지 방 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2,096	76,853	83,443	94,773	99,665	436,830	5.00%
세 출	525,786	530,627	546,133	563,018	578,378	2,743,942	2.40%
경 상 지 출	119,596	127,462	134,283	142,145	149,569	673,055	5.80%
사 업 수 요	406,190	403,165	411,850	420,873	428,808	2,070,886	1.40%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 연평균 증가율 = $[(\text{최종연도}/\text{기준년도})^{1/(\text{전체연도 수} - 1)} - 1] \times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정선군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1	6,020
여성정책추진사업	1	4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6	4,54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4	1,433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정선군은 [모델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89,181	17,798	1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지 원 기 타 부 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7,798	
환경산림과	행락지 화장실 관리	124	
안전건설과	굴암리(옷바우) 안전시설보강	40	
지역경제과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639	
보건소	정선군립병원 기능보강	4,708	
보건소	정선군립병원 환경개선	2,900	
주민생활지원과	사북읍 종합복지회관 시설개선 사업	606	
환경산림과	지장천하수처리시설(2단계)사업	1,904	
환경산림과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	3,688	
지역경제과	사북읍 빛의도시 조성사업	300	
문화관광과	폐광지역 특화마을 조성(예미MTB마을조성)	150	
수질환경사업소	관로확장공사	500	
수질환경사업소	마을하수도운영	13	
여성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 지원(자체)	100	
문화관광과	주요관광지 관리	3	
문화관광과	주요관광지 연계 시설 확충	50	
문화관광과	주례마을 어웃연못 조성	900	
문화관광과	주례마을 관리	5	
안전건설과	마을안길 확포장 및 정비사업	20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반시설(농어촌공사소관) 유지관리 사업	200	
환경산림과	하천·소하천 정비사업	300	
수질환경사업소	남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429	
농업기술센터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	39	

4-4.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정선군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계	16	56	63	149	380,507	350,838	29,669
기획감사실	1	3	3	6	15,853	14,565	1,287
자치행정과	1	2	4	7	19,974	18,891	1,084
세무회계과	1	3	3	5	40,637	39,751	886
여성청소년과	1	5	6	9	21,751	17,126	4,625
주민생활지원과	1	5	7	13	43,588	37,752	5,835
민원봉사과	1	3	3	7	1,079	1,325	-246
환경산림과	1	6	6	16	27,611	27,537	74
문화관광과	1	3	3	9	27,222	23,504	3,718
지역경제과	1	5	5	12	27,611	34,628	-7,017
안전건설과	1	4	4	7	27,938	20,735	7,203
도시건축과	1	4	4	12	24,680	24,186	494
동계올림픽지원단	1	1	3	5	7,370	6,685	686
농업기술센터	1	4	4	23	34,576	30,710	3,866
보건소	1	3	3	9	19,994	14,960	5,034
수질환경사업소	1	1	1	1	33,355	31,982	1,373
의회사무과	1	4	4	8	625	575	50
읍면	0	0	0	0	6,643	5,926	715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 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9.59	72.98	20.57	36.69	45.22	52.4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89,100	52,800	0
	부단체장		36,3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5,600	205,600	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19,405	54,000	△765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1,640	
	의원국외여비		23,000	
지방보조금		15,412,000	12,937,079	△2,474,921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645,110	645,11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161,000	1,132,500	△28,500
공무원 일·숙직비		310,650	310,650	0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 지방의회 관련경비, 지방보조금,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행정안전부 기준액 미만으로 편성하여 차액이 마이너스(△)로 발생하였습니다.

5 재정운용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40	2,053
인건비 절감	183	226
지방의회경비 절감	19	10
업무추진비 절감	32	64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297	577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761	1,089
지방청사 관리.운영	342	87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1,964	630
지방세 징수율 제고	△242	△822
지방세 체납액 축소	△1,200	323
경상세외수입 확충	△525	△1,057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07	2,116
탄력세율 적용	△104	7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7년에 우리 정선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73백만원
예산편성기준 위반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관련 선심성 예산 편성·집행 및 업무처리 부적정	51백만원
수의계약 부적정	이동식 화장실 구매 설치 수의계약 부적정	22백만원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7년에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며, 우리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값	균평균
I.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5.97%	9.09%	5.23%
	2.경상수지비율	75.32%	71.09%	68.26%
	3.관리채무비율	0.82%	1.24%	2.07%
	4.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7.39%	18.82%	21.34%
	5. 통합유동부채비율	3.26%	13.94%	8.68%
	6.공기업부채비율	0.10%	0.15%	9.73%
	7.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4.99%	-2.17%	-3.01%
II.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7.61%	신규지표	5.62%
	8-1. 지방세수입증감률	10.09%	신규지표	9.65%
	9. 경상세외수입비율	3.37%	3.71%	1.23%
	9-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4.44%	-2.22%	7.04%
	10. 지방세징수율	97.43%	96.89%	95.07%
	10-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55	0.9908	1.0071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50%	0.56%	0.56%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8.20%	40.27%	23.38%
	12. 세외수입체납액비율	0.70%	0.55%	0.61%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59.37%	-2.53%	16.59%
	13.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92	1.0015	0.9995
	14. 지방보조금비율	11.08%	12.17%	11.69%
	14-1. 지방보조금증감률	9.51%	4.80%	4.30%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3.10%	2.43%	1.77%
	15-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49.75%	11.33%	28.31%
	16.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90.42%	79.93%	85.66%
	17.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83.22%	91.55%	86.11%
	18. 행사축제경비비율	1.03%	1.20%	1.06%
	18-1. 행사축제경비 비율증감률	-14.40%	28.37%	-0.31%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10.78%	1.63%	-2.35%	

▶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7년 재정분석 결과에 따라 산정

※ 2018년 2월 수시공시 사항으로 금회 공시건과 함께 공시함.

붙임1

유사단체 분류 (기초자치단체)

유형		자치단체명				
시	시-(1) 15개 단체	경기 수원시 경기 안산시 충남 천안시	경기 성남시 경기 안양시 전북 전주시	경기 고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북 포항시	경기 용인시 경기 화성시 경남 창원시	경기 부천시 충북 청주시 경남 김해시
	시-(2) 21개 단체	경기 평택시 경기 김포시 충북 충주시 전남 순천시 경남 양산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경북 경주시	경기 시흥시 경기 안성시 전북 군산시 경북 구미시	경기 파주시 강원 춘천시 전북 익산시 경남 진주시	경기 광명시 강원 원주시 전남 여주시 경남 거제시
	시-(3) 19개 단체	경기 군포시 경기 포천시 충북 제천시 전남 목포시	경기 이천시 경기 하남시 충남 보령시 경북 김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여주시 충남 서산시 경북 안동시	경기 오산시 강원 강릉시 충남 논산시 경북 경산시	경기 구리시 강원 삼척시 충남 당진시
	시-(4) 20개 단체	경기 의왕시 강원 속초시 전북 김제시 경북 상주시	경기 동두천시 충남 공주시 전남 나주시 경북 문경시	경기 과천시 충남 계룡시 전남 광양시 경남 통영시	강원 동해시 전북 정읍시 경북 영주시 경남 사천시	강원 태백시 전북 남원시 경북 영천시 경남 밀양시
군	군-(1) 21개 단체	부산 기장군 경기 양평군 충남 예산군 전남 장흥군 경남 거창군	대구 달성군 강원 홍천군 전북 완주군 전남 해남군	인천 강화군 충북 음성군 전북 고창군 전남 무안군	인천 옹진군 충남 부여군 전북 부안군 경북 칠곡군	울산 울주군 충남 홍성군 전남 고흥군 경남 함안군
	군-(2) 20개 단체	경기 가평군 충북 진천군 전남 담양군 경북 의성군	경기 연천군 충북 괴산군 전남 화순군 경북 울진군	강원 평창군 충남 금산군 전남 영암군 경남 창녕군	강원 정선군 충남 서천군 전남 완도군 경남 고성군	충북 영동군 충남 태안군 전남 신안군 경남 합천군
	군-(3) 20개 단체	강원 횡성군 강원 고성군 전북 임실군 경북 청도군	강원 영월군 강원 양양군 전북 순창군 경북 성주군	강원 철원군 충북 보은군 전남 보성군 경북 예천군	강원 양구군 충북 옥천군 전남 영광군 경남 하동군	강원 인제군 충북 증평군 전남 장성군 경남 함양군
	군-(4) 21개 단체	강원 화천군 전북 장수군 전남 진도군 경북 고령군 경남 산청군	충북 단양군 전남 곡성군 경북 군위군 경북 봉화군	충남 청양군 전남 구례군 경북 청송군 경북 울릉군	전북 진안군 전남 강진군 경북 영양군 경남 의령군	전북 무주군 전남 함평군 경북 영덕군 경남 남해군
자치구	구-(1) 13개 단체	서울 중랑구 서울 마포구 서울 강남구	서울 강북구 서울 양천구 서울 송파구	서울 도봉구 서울 강서구 서울 강동구	서울 노원구 서울 구로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초구
	구-(2) 12개 단체	서울 종로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작구	서울 중구 서울 성북구 서울 관악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성동구 서울 금천구	서울 광진구 서울 영등포구
	구-(3) 22개 단체	부산 진구 부산 사상구 인천 중구 인천 서구 대전 유성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동구 인천 남구 광주 서구 울산 남구	부산 사하구 대구 북구 인천 연수구 광주 북구	부산 금정구 대구 수성구 인천 남동구 광주 광산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대전 서구
	구-(4) 22개 단체	부산 중구 부산 남구 대구 서구 광주 남구 울산 동구	부산 서구 부산 북구 대구 남구 대전 동구 울산 북구	부산 동구 부산 연제구 인천 동구 대전 중구	부산 영도구 부산 수영구 인천 계양구 대전 대덕구	부산 동래구 대구 중구 광주 동구 울산 중구

※ 2017년 재정분석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

- '16년 인구규모, 최근5년 인구증감률, 재정력지수(시·군) 또는 재정자립도(자치구), 일반회계 세출결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